

#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(Brain Pool / Brain Pool+) 2025년도 제2차 신규과제 공고

2025년 제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「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」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,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5월 30일

<주무부처>	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	유상임
<전문기관>	한국연구재단 이사장	홍원화

## I. 개요

### 1. 사업목적

- 국내 산·학·연 연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해외 우수 과학자를 국내 연구기관에 초빙하여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국내 연구환경 국제화, 신성장동력 확보, 신진 연구인력 양성,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
- ※ 기관의 중점 연구분야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'25년 기관유치형 신설

### 2. 선정규모 ※ 운영상황에 따라 신규과제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 등 변동 가능

- 유형 : 기관유치형
- 선정규모(안) : 6과제 내외
- 과제당 연구비 : 3억 ~ 9억원 이내 / 年
- ※ 1차년도 연구비는 연구수행 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원(간접비 포함)
- 총 연구기간 : 3년 / 2025.9.1. ~ 2027.12.31.

## II. 공모 세부내용

### 1. 개요

지원단위 : 연구개발기관

※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연구분야(자연과학·생명과학·의약학·공학·ICT융합)의 전략적 해외인재 유치계획을 수립하여 신청

초빙대상 : 채용일 기준 해외 거주 중인 박사학위 소지자 등

지원분야 : 과학기술 전 분야

과제구성 **※ 기관 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**

- 연구개발기관은 1개 학문분야(자연과학·생명과학·의약학·공학·ICT융합)를 선택하여 분야 내 최대 3개의 CRB/RB 분야까지 구성할 수 있음

#### <구성 예시>

[과제 구성 예시]		[연구개발계획서 작성]	[평가]	[관리]
<b>A 기관</b> ex. 자연과학 (학문분야 택1)		기관 단위의 유치 전략에 따른 <b>기관 핵심 분야, 기관차원의 지원계획 작성</b>	기관 단위 유치계획 및 지원계획, 연구내용 등 종합 평가  ※ 신청 시 선택한 평가전문분야 및 가중치에 따라 평가패널 구성 예정	인건비, 연구생활장려금, 항공료보험료, 이주비 자녀학비는 BP 지원기준 준용 해외과학자 채용시 전문기관 보고 연구비 총액의 60% 이상 해외과학자 인건비로 계상 간접비 5%
CRB I	RB① (국내) 공동연구원 해외과학자 1	세부 연구계획 및 성과목표에 따른 <b>유치 대상 및 기준, 유치과학자 활용 계획 작성</b>		
CRB II	RB② (국내) 공동연구원 해외과학자 1 해외과학자 2			
CRB III	※ RB 단위 연구팀 : 공동연구원(국내) 1명 + 해외(유치)과학자 n명	※ 개인유치형 유형과 달리 대상자 특정하지 않아도 되나 인건비/채용계획(기준)/연구계획 및 목표 필수 기재 및 후보군 제안 권장		

※ CRB / RB는 각 3개까지 구성하여 가중치 설정(총 100%) / 과제 구성 예시는 [별첨] FAQ 4쪽 참조  
 ※ 연구책임자는 공동연구원 중 대표자 1인 또는 해당 과제를 총괄할 수 있는 학과장/학장도 가능

지원기간 및 연구비 규모

연구 형태	총 연구기간 (당해연도 연구기간)	연구비	비고
정주형 <b>(full-time)</b>	2025.9.1.~2027.12.31. (2025.9.1.~2025.12.31)	과제(기관) 당 3억 ~ 9억/년	• 해외우수과학자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 자율 신청 ※ <b>인건비, 연구생활장려금, 항공료보험료, 이주비, 자녀학비</b> 는 반드시 <b>BP 지원기준 준용 필수</b>

□ 지원내용 : 기관(과제) 당 年 3억 ~ 9억원 이내

※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연구분야의 전략적 해외인재 유치 지원

○ 해외우수과학자 인건비 : 월 최소 5백만원 ~ 최대 25백만원\*

\* 해외우수과학자의 原소속기관 연봉수준 지급(퇴직금 및 기관부담금 등 포함, 백만원 단위 올림)

- 해외우수과학자 인건비는 연구비 총액의 60% 이상 계상 필수

○ 연구활동비

- 항공료·보험료, 이주비, 자녀학비, 연구생활장려금은 BP 지원 기준 적용

※ 세부지원 내용 및 기준은 「BP 사업안내서」 참조

○ 간접비 : 수정직접비의 5%

○ 기타 위 제한 사항을 제외하고, 혁신법에 따른 연구비 구성 가능

- 단,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위탁연구개발비 계상불가

※ 공동연구원 연구비 사용 가능(개인유치형 유형은 해외과학자 외 연구비 사용 불가)

직접비			간접비
인건비	연구활동비	그 외 비목	
해외우수과학자 인건비 참여연구원 인건비 등 (포닥, 학생연구원 등) 그 외 혁신법에서 정하는 비목	항공료·보험료, 이주비, 자녀학비, 해외연구자유치지원비(연구생활장려금) 그 외 혁신법에서 정하는 비목 ※ 국제공동연구개발비, 위탁연구개발비 계상불가	혁신법에 따름	수정직접비의 5% (전담인력 인건비 포함)

**접수 및 연구개발비 집행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(필독)**

※ **해외우수과학자 인건비는 반드시 총 연구비의 60% 이상 계상 및 집행**

- 계획에 따라 채용 및 인건비 집행하되, 1차년도\*에 한해 입국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선정 시 초빙 계획 이행 권고

\* 단, 비자발급 지연 등의 사유로 집행 불가할 경우 예외적 적용 가능하나 1차년도 운영상황에 따라 과제 중단 가능

※ **해외우수과학자 인건비, 항공료·이주비, 자녀학비, 연구생활장려금은 반드시 BP 「사업안내서」 상 기준을 적용**

- 위 제한사항을 제외하고 혁신법에 따른 연구비 구성 및 국내 공동연구원 동반 사용 가능

- 국제공동연구개발비, 위탁연구개발비 계상불가

※ **과제당 전담인력 1인 반드시 지정하고, 책정된 간접비의 50%를 전담인력 인건비로 집행**

- 전담인력은 해외과학자의 국내 정주 및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으로 지정하고 자격제한은 없음

- (비목) 간접비 - 인력지원비 - 연구지원인력 인건비

※ 공동/위탁연구개발기관 구성 불가

※ 연구개발비는 '국가연구개발혁신법' 제13조,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'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'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·집행·관리하여야 하고,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상세 계획 기재 필수

※ 직접비 내 인건비 현금 계상 및 연구수당 집행 계획 수립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)에 근거한 계획 수립 필수

※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[별표1]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적용

※ 간접비는 5% 산정 (직접비-현물-위탁연구개발비-국제공동연구개발비-연구개발부담비) × 5%

## 2.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

□ 선정규모(예정) : 총 6과제 내외

□ 신청자격

○ 연구개발기관 ※ 기관 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

-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, 국·공립연구기관,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,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,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

※ 국내에 설립된 외국(교육)기관 및 해외에 소재한 국내기관의 분원 등 지원 불가

※ 2025년 1차 공고(BP 기관유치형)에 선정된 기관은 지원 불가

○ 연구책임자 : 공동연구원 중 대표자 1인 또는 해당과제를 총괄할 수 있는 학과장/학장 등도 가능

○ 참여연구원

- 공동연구원 : 국내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조교수, 선임연구원,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부서장(연구소장) 이상인 자

※ 공동연구원은 RB 분야(CRB 내 소규모 연구그룹) 내 1인만 구성 가능하며, 해당 분야 내 해외과학자 관리 및 연구수행 전반을 관리할 책임을 가짐

※ 혁신법 상 참여연구원의 지위를 가지며 사업 종료 시까지 수행가능한 자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·포기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 가능

- 공동연구원 외 : 학부생 및 석·박사 과정생, 학·석·박사급 연구원

○ 해외우수과학자

-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외 해외 거주 중인 박사학위 소지자

-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박사학위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도 유치 가능

※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및 해외 일시 체류 중인 자, 국내기관에 소속된 자는 채용 불가

### 해외과학자 유치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(필독)

- ※ 채용일 기준, 박사학위 취득 예정인 자 및 해외에 일시 체류 중인 자는 유치 불가(주관기관 확인 필수)
- ※ 개인유치형 과제와 달리, 신청 시부터 해외 연구자를 특정할 필요는 없으나 과제 수행을 위한 계획(구체적인 유치 기준 및 채용계획, 연구내용 등)은 필수 기재하며, 필요 후보군 및 협의 과정 등 제안 권장
  - 해외과학자 채용이 완료된 후 전문기관(한국연구재단)으로 보고 필요(인건비 비율 유지되도록 인력관리 철저)
  - 해외과학자 개인 사정(국내외 취업 등)으로 계속수행 불가 시, 전문기관 승인을 득하여 연구원 변경 가능
  - 연구계획 및 내용에 필요한 해외과학자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른 등 경력/연차를 고려하여 구성
- ※ 해외과학자 관리책임은 연구개발기관에 있으며 기타 해외과학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BP 사업안내서에 따름
- ※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3책5공 예외

### 3. 접수기간

□ 공고기간 : '25.5.30.(금) ~ '25.7.2.(수)

□ 접수기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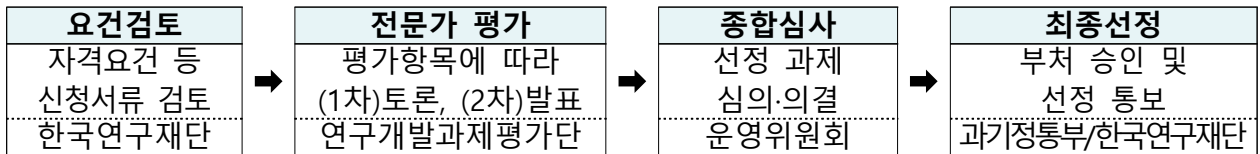
차수	연구책임자 온라인 신청기간	연구개발기관 승인기간
2차	'25.5.30.(금) ~ '25.7.2.(수) 18:00:00	'25.5.30.(금) ~ '25.7.4.(금) 18:00:00

※ IRIS 시스템을 통해 자동 접수 마감되며, 마감일시 이후 구제 불가

※ 과제 선정상황에 따라 접수기간 및 차수 변동 가능

### 4. 평가방법

□ 평가절차 ※ 접수 상황에 따라 평가 절차는 달라질 수 있음



- 요건검토 : 연구개발기관·연구책임자 등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
- 전문가평가 : 연구내용 및 유치계획에 대한 전문가 토론, 기관 발표 평가
  - (토론평가) 패널별 외부 전문가 토론을 통한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
  - (발표평가) 연구내용, 유치계획에 대한 연구책임자 발표로 평가 실시
 ※ 기관유치 계획 관련 발표자 추가 참석 가능하며, 차수별 평가 시 지표별 배점 상이
- 종합심사 : 정책적 기본 방향(잔여예산, 유형별 투입 예산, 육성 전략분야 등)을 고려하여 종합심사 및 최종 지원과제 선정
- 최종선정 : 과기정통부 최종 확정 및 한국연구재단 선정 통보

□ 평가항목 및 배점

평가항목	평가지표	배점	
		1차	2차
사업 목적과의 부합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연구기관 신청분야 국가정책 부합성 및 정부지원 필요성</li> <li>■ 해당 연구개발기관 및 분야의 해외 인력 유치 필요성</li> </ul>	30	20
해외 우수과학자 선정 및 유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해외 우수과학자 선정 기준의 적합성 및 구체성</li> <li>■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역량 및 유치계획의 타당성·구체성</li> </ul>	30	20
해외 우수과학자 활용 연구계획 및 기대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해외과학자 활용계획(연구내용·목표 등 포함)의 우수성 및 구체성</li> <li>■ 해외 우수과학자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기관의 역량</li> <li>■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를 통한 정성·정량적 기대효과 (연구개발성과 등 포함) 및 파급효과</li> </ul>	20	30
해외 우수과학자 지원계획 및 향후 활용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연구개발기관의 해외 우수과학자 지원의지 및 지원 계획의 구체성 (연구비 지원, 연구공간 및 환경, 행정지원, 정주·주거 지원 등)</li> <li>■ 연구종료 이후 해외 우수과학자 향후 활용계획 (국내정책, 국제네트워크 지속, 공동연구 등)</li> </ul>	20	30
합 계		100	100

**5. 향후 추진일정(안)** ※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
일정	추진내용
'25.5.30.(금)	2025년도 제2차 BP사업 기관유치형 신규과제 공고
'25.6월 중	사업 홍보
'25.7.2.(수)	(BP 기관유치형) 연구책임자 접수 마감(18:00:00)
'25.7.4.(금)	(BP 기관유치형) 연구개발기관 승인 마감(18:00:00)
'25.7~8월	선정평가(요건검토, 전문가평가, 종합심사) 및 최종선정(8월 중순 경)
'25.9.1.	연구개시

**6. 신청 및 참여 시 유의사항**

- 기관의 중점 분야별 해외인재 유치계획에 연계한 전략적 지원을 위해 기관의 집행 자율성을 보장하되, 사업 지침 및 관계 법령을 반드시 준수
- 선정 후 해외우수과학자 국내 유치 및 채용하여 연구 수행
  - 총 연구비의 60%이상 해외우수과학자(초빙과학자) 인건비 집행 필수
    - ※ 단, 1차년도에 한하여 비자발급 지연 또는 참여연구원(초빙과학자)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 집행 가능하나, 운영상황에 따라 지원 중단될 수 있음
    - ※ 정당한 사유없이 기 유치한 과학자 급여 증액은 불가하며 인력관리에 유의
- 연구개발비는 협약 및 연구개시 이후 집행 가능
  - 초빙과학자 인건비, 항공료·보험료, 이주비, 자녀학비 등 BP 사업 기준 외 혁신법에 따른 연구비 구성 및 사용 가능
- 초빙과학자의 활용 및 근태 등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직접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, BP 운영관리지침 및 사업안내서 등을 준용
  - ※ 사업목적 및 연구수행계획을 고려하여 연구과제 및 초빙과학자 관리 철저 당부
  - ※ 초빙과학자 사업 참여 요건 및 제반서류 등 검토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
-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3책 5공 예외
-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참여제한 또는 연구개발비에 대해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
- 초빙과학자의 6개월 이상 해외 출장 시, 전문기관 승인 필수
  - ※ 연구계획과의 정합성을 바탕으로 제한적 허용
- 초빙과학자 국내외 이직 및 채용 시(유치기관 전임 포함) 참여 중단 및 연구원 변경
  - ※ 최초 채용 시 전문기관에 보고하며, 초빙과학자 변경은 전문기관 승인 사항임

- 연구성과물 발간 시 사사표기 및 주관연구개발기관명을 병기하여야 함
- 신청서 대비 협약 시 자의적인 성과목표 변경은 불가하며, 과제 수행 중에 성과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승인 필수

## 7. 제출서류

과제 신청 시 제출 서류
① 연구개발계획서 ②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(연구책임자 및 국내 참여연구원) ③ 연구윤리·청렴 및 보안서약서(연구책임자 및 국내 참여연구원) ④ (기업 및 기업부설연)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및 자격증빙(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/최근 2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/기업유형(대기업, 중견기업, 중소기업))
선정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자체 확인 서류
① 해외우수과학자의 최근 1년간 급여증빙(개인·기관 부담금 등을 포함) - 원 소속기관에서 발급한 월별 급여명세서, 급여확인서 등(원 소속기관 직인 또는 날인 필수) ② 해외 거주관할권의 공인된 정부 단체가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③ 해외우수과학자의 최종학위증명서·경력증명서* * 경력증명서는 유치 연구자가 박사학위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이고,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 제출 ④ 해외우수과학자의 초빙 수락서(자유양식) ⑤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(해외우수과학자 및 전담인력) ⑥ 연구윤리·청렴 및 보안서약서(해외우수과학자 및 전담인력) ⑦ 기타 초빙과학자 입국에 관한 서류 등(‘24.1.1. 이후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등)
서류제출 시 유의사항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연구개발계획서*는 표지·요약서·첨부서류·안내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 및 제출              * 연구개발계획서는 국내 연구책임자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(연구내용 등 학술적인 부분은 해외우수과학자와의 연구계획 공유를 위해 영어 작성 가능)</li> <li>○ 연구개발계획서 등 반드시 정해진 양식(별첨)에 따르며, 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누락할 경우 <b>요건검토 시 탈락할 수 있음</b></li> <li>○ 해외우수과학자의 초빙 수락서는 <b>자유양식</b>이며, e-mail 등 서명이 첨부된 교환서신도 가능</li> <li>○ 해외우수과학자의 <b>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</b>는 최종 선정 시 인건비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 서류로, 미제출시 주관기관에서의 채용 취소 가능</li> <li>○ 제출서류는 <b>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</b>되어야 하며, 기타 언어의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공증을 받아 첨부하여야 함</li> <li>○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최종 선정된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</li> <li>○ 연구계획서 및 첨부파일 탑재 중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종 PDF 변환된 결과를 확인              - 표/이미지 누락, 보안문서로 설정된 경우, 숨은 설명, 유료 및 번들폰트 사용 등</li> <li>○ 보고서 작성과정에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한 경우, 적정한 위치에 AI 도구 사용내역을 기술할 것을 권장함</li> </ul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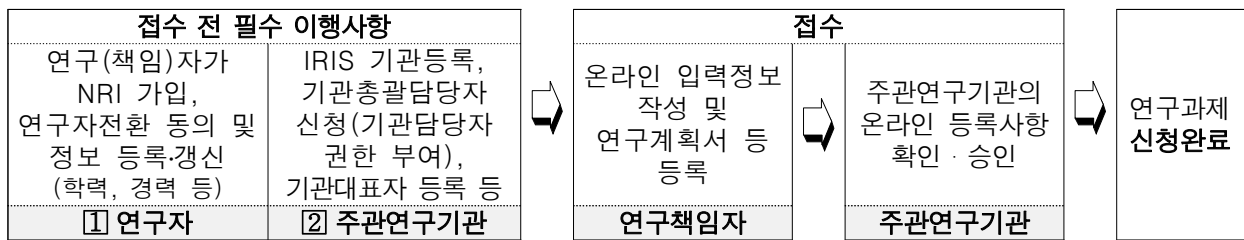
### Ⅲ. 신청방법 및 신청제한 요건

#### □ 온라인 신청(IRIS)

▶ 2025년도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신규과제 접수는 기존 한국연구재단의 e-R&D를 대체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(KISTEP)이 운영하는 IRIS\*(<https://www.iris.go.kr>)를 통해 과제신청,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.

\* IRIS(Integrated R&D Information System):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, <https://www.iris.go.kr>)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·승인



※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

▶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세부내용은 [별첨(매뉴얼)1-1](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(KISTEP IRIS운영단)) 및 [별첨(매뉴얼)1-2](IRIS 회원가입(연구자 전환)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) 참조

① (연구자) ① IRIS 회원가입, ② IRIS 내 NRI(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)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, ③ NRI 내 학력/경력\*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\*\* 정보 등록 필수

\* 경력정보에서 근무(소속)부서 등록 필수

\*\*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, 수행 중/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

※ ① 및 ②: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(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), ③: 연구책임자만 필수

② (주관연구기관) 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

※ 기관대표자 및 기관(총괄)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가 필수이며,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,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

<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>

※ 세부내용은 [별첨(매뉴얼)1-3(주관연구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)] 참조

-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이 아닌, <00대학교>로 신청요망

- <00대학교>의 기관정보(기관대표자 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,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) 등록 필수  
- 승인권한은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산학협력단 과제뿐만 아니라 본교명(00대학교)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

※ 현재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으로만 기관정보(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)가 등록되어 있고,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<00대학교>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으로도 신청가능

▶ IRIS 문의처: IRIS 콜센터 1877-2041 또는

IRIS 홈페이지>알림·고객>시스템·서비스문의>사용문의 게시판 활용

※ IRIS 시스템을 통해 선택한 기술분류(평가전문분야 등)를 기반으로 평가

## □ 신청 제한 및 지원제외 조건

- (연구책임자 신청제한)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참여제한·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연구자
- (연구개발기관 지원제외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

- ①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
-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)
- ③ 민사집행법,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)
- ④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
-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(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(CB, BM)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)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(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 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"BBB" 이상인 경우 또는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% 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),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)
-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(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)
-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절"

※ 단,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(공사)은 적용하지 않음

- (유사과제 신청제한)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 연구개발과제(타부처 포함)와의 차별성을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
- 기존 과제와 중복성(차별성 없음) 판정 시 선정에서 제외

## IV. 문의처

문 의 처	
IRIS 시스템 문의	IRIS 콜센터 ☎ 1877-2041
사업신청 관련문의	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기반조성팀 (BP) ☎ : 02-3460-5744, 5746 / E-mail : <a href="mailto:sjhan@nrf.re.kr">sjhan@nrf.re.kr</a> , <a href="mailto:djkim@nrf.re.kr">djkim@nrf.re.kr</a>
영문 문의 (Q&A in English for preliminary BP fellow)	연구자지원단(Brain Pool Support Team) ☎ : +82-70-8806-5152 E-mail : <a href="mailto:ghd_nrf@etners.com">ghd_nrf@etners.com</a>

※ 전화문의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이메일 문의 부탁드립니다.